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32 발의연월일: 2024 .9. 10.

발 의 자:전진숙·윤건영·김한규

김남근 · 김남희 · 황정아

송재봉 · 양부남 · 이광희

이연희 • 문금주 • 권향엽

정진욱 • 임미애 • 채현일

강준현 • 박희승 • 박해철

서영교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 이에 치료·보호 목적 외 징벌 등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·강박하거나, 보건복지부 격리·강박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환자를 병실에 강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지시·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.

그런데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·강박은 신체 제한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서 비자발적 입원치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.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치료는 정신질환자를 무력화된 존재로 느끼게 하여 회복을

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 치료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령에 격리·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·정비하여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·강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5 조제3항·제89조제1항제11호 신설).

또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 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 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제16호·제10조제1항제8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6.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입원과, 신체적 제한 등 본인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한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제1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8. 비자의 입원 및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 제75조제2항 후단 중 "한다"를 "하며,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격리실에서 단독으로 시행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③ 제2항의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89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1.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적 제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가계획의 수립 등) ①・	제7조(국가계획의 수립 등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	③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	
되어야 한다.	
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6.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
	지 아니한 입원과, 신체적
	제한 등 본인의 동의에 의하
	지 아니한 치료를 최소화하
	기 위한 방안
<u>16.</u> (생 략)	<u>17.</u> (현행 제16호와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	제10조(실태조사) ①
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	
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	
야 한다. 다만, 정신건강증진	,
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	
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	
있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비자의 입원 및 격리 등 신
	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
	영향

8. (생략)

- ② ~ ⑥ (생 략)
- 제75조(격리 등 제한의 금지) ① / (생 략)
 -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 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 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 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격리는 해 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.

<u><신 설></u>

제8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
<u> </u>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75조(격리 등 제한의 금지) ①
(현행과 같음)
②
<u>하며, 묶는</u>
등의 신체적 제한은 격리실에
서 단독으로 시행해야 한다.
③ 제2항의 신체적 제한의 기
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
<u> 정한다.</u>
제89조(과태료) ①

0 (혀해 제8항와 간은)

부과한다.-----.1. ~ 10. (생 략)1. ~ 10. (현행과 같음)<신 설>11.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
반하여 신체적 제한 조치를
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자② (생 략)② (현행과 같음)